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5. 19.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3. 5. 25.

다. 상정일자: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2023. 6. 1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전자이미지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 상위법령 명칭 수정(안 제1조)
- 전자이미지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주체를 구분(안 제10조)

다. 참고사항

- O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
- O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9조제2항

O 입법예고: 2023. 4. 13. ~ 5. 3. (제출된 의견 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전자이미지공인대장과 전자이미 지공인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 는 것임.

O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는 내용임.

(안 제10조)에는 "전산정보과장"을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공"을 "관리"로 하며, "한다."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공인등록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는 관리주체를 구분하는 내용임.

O 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현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u>원안가결</u>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 타: 없 음

[별표 1] 관계 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9조(등록)

② 행정기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컴퓨터파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